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61
----------	------

발의연월일 : 2025. 2. 11.

발의자 : 이인선 · 고동진 · 배준영

김태호 · 김정재 · 이달희

김기현 · 성일종 · 정동만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p> <p>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p>	<p>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 ----- ----- ---<u>2031년 12월 31일</u>----- ----- 2. ----- -----</p>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 ⑩ (생 략)	----- <u>2031년 12월 31일</u> ----- ----- ② ~ ⑩ (현행과 같음)
---	---